

2009년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Prospects for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2009:
With Special Reference to Public Pension*



윤 석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2009년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그 중에서도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조치,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가입 특례적용, 노후소득 현실화를 위한 기준소득 상·하한 인상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조직의 경우 기금 운영에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덧붙여 만성적인 재정 불안정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제도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수직역연금 제도개편의 기본방향은 지금보다는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액 및 보험료 부담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한편 2007년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2009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 위주로 2008년에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에 반해, 2009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바람직한 재구조화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도입되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 들어가며

2009년은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IMF 경제위기를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외형상 체계화된 제도 체계에 덧붙여 이미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2009년에도 다양한 형태로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글에서는 사회보험 중에서도 공적연금에 중점을 두어 2009년도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시도해 보자 한다.

2. 공적연금

일반 국민대상의 국민연금과 공무원 등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지역연금의 경우 2009년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2006년부터 제도 개선논의가 진행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지역연금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덧붙여 공적연금간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종간 이동에 따른 공적연금제도 혜택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 제도 관련

① 기준소득 상·하한 현실화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기준소득월액)을 상한(월소득 360만원)과 하한(월 소득 22만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공공부조, 상한액 이상은 개인연금 등 사회적보장의 영역으로 상정하여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통해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도입된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이 1995년에 조정된 이후 변경되지 않

아 그동안의 소득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6월말 현재 하한 소득자가 18,213명(전체 가입자의 0.14%), 상한 소득자가 175만여명(13.2%)으로 1995년과 비교시 하한소득자는 급감한 반면, 상한소득자는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경우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연금보험료 부담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급여수준 하락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상한을 일정기준, 즉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5배(2.5A)에 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¹⁾ 예정대로 상·하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상한액은 2009년에 380만원, 2010년에 400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다. 한편 저소득층의 낮은 연금액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하한액 역시 평균소득의 0.2배(0.2A)로 점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정대로 하한이 조정될 경우 2009년에 24만원, 2010년에 28만원으로 소득 하한액이 상향 조정될 것이다.²⁾

② 기초생활수급자, 육아휴직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보험료 경감

현재 임의가입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할 예정이다.³⁾ 이 경우 보험료는 사용자와 본인이 각

각 50%씩 부담하게 되나, 본인의 기여금이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서 차감·보전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수혜자가 2009년 약 17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자(42천명)와 육아휴직자(11천명)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경감시켜 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외기간에 해당하는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소득의 4.5%)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제도가 변경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2008년 현재 약 85만명에 달하는 실업급여수급자가 국민연금에 당연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다.

③ 사업장 가입자 적용확대

2009년에는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특례적용될 것이다. 현재 산재보험에서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유형에 대해 2008년 7월부터 특례적용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들에 대해 산재보험의 특례적용사례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분야는 국민연금의 특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수월해지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2) 국민연금기금 운용조직 개편관련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를 포함한 관련 정부 부처의 책임 하에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금관련 주요 정책은 정부 및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에 입각한 기금운용을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가입자가 투자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현행 기금운용체계가 기금운용에서의 전문성과 자율성 부족을 초래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기금운용에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에는 정부가 연금제도, 여유자금 운용을 포함한 기금 전체를 관리·운영하였으나, 향후에는 기금의 성격에 따라 관리운영 주체가 분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8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국민연금 관리운영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비상설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상설 조직화하며,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전담할 기금운용공사가 설립되어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도록 되어있다. 반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되지 않은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역할이 격상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로 그 기능이 이관될 예정이다.⁴⁾

적용제외가 허용될 것이다.

4) 이같은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관리운영체계 개편에 대해 2008년 11월 민주당(강기정 의원안)이 또다른 법안을 제안함에 따라 정부입법(안)과 야당(안)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관리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1) 2013년까지의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영계획을 반영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2008년 하반기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국민연금 관련내용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힌다.

2)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소득 상·하한액 조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소액이나마 보험료 인상이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소득 상·하한액 조정시기를 경제침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연기할 필요성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3) 가입자 편의를 위해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할 것이나, 해당자가 피치 못할 이유를 들어 사업장 가입자로의 적용제외를 요청할 경우

2)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현황과 전망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은 '저부담·고급여', 즉 적게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재정불안정이 심

각한 상황이다. 특수직역연금제도 중에서도 제도 도입시점이 가장 늦은 사학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액수의 적자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매우 거센 실정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이미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달리 군인연금은 아직도 제도개선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 통상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서 공무원연금의 제도개편내용을 그대로 채택하였던 전례를 감안하여 본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중심으로 제도개편 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한 상황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된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외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 재정 불안정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 1990년 2만 5천명에 불과하였던 연금 수급자수가 2007년 25만명에 달하고 있어 불과 17년만에 수급자 수가 10배나 증가하였다.⁵⁾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재정수지가 계속 악화되어왔고 제도개혁이 없을 경우 재정 불안정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퇴직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위해 정부가 매년 공무원연금 재정의 적자분을 메워주는 적자보전금이 2001년 599억원에서, 2008년 1조 3천억여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별다른 제도 개선이 없을 경우 2009년에는 적자보전액이 2조원에 달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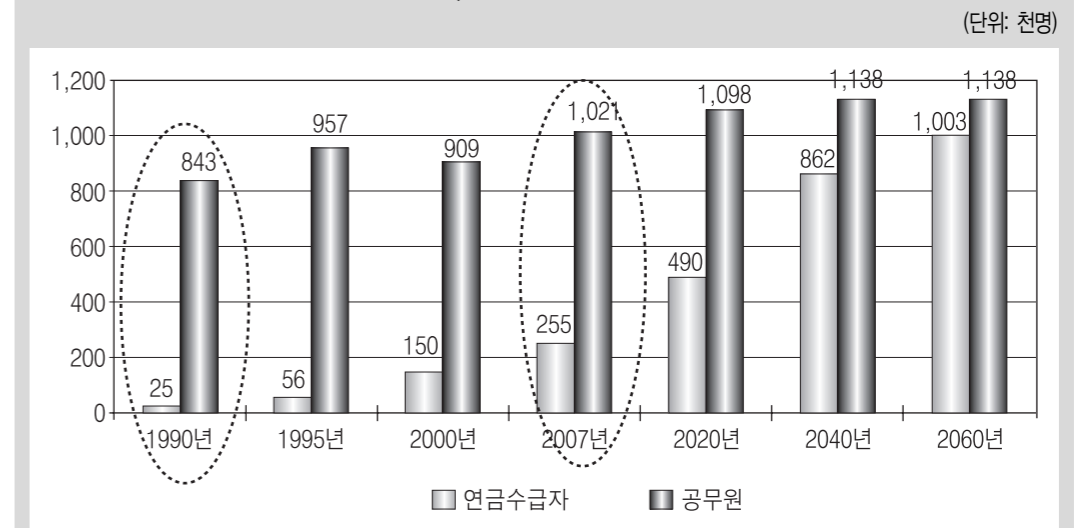
(1) 공무원연금 현황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제도도입이후 지속적으로 연금급여를 인상(1960년 50% → 1981년 76%)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 불안정이 불가피

표 1. 제도 개편 전후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리체계 비교

구분	현행	정부입법안 (08.7)	강기정의원(안) (08.11)	
기금운용위원회	비상설 복지부소속	상설 민간독립기구	상설 복지부소속	
구성	인원	20인	7인	15인
	위원장	복지부장관	민간전문가	복지부장관
	위원	정부위원: 5인 (재정, 농림, 지경, 노동, 공단) 민간위원: 14인 [사용자·근로자대표(각 3인) 지역가입자대표(6인) 민간전문가(2인)]	정부위원: 없음 민간위원: 6인 [금융·투자분야 전문가 - 단 신설될 공사사장 제외]	정부위원: 1인(공단) 민간위원: 13인 상임전문가(4인) [사용자·근로자대표(각2인) 지역가입자대표(3인) 국회추천 공익대표(2인)]
	상임	-	3인 (위원장 및 위원 2인)	4인
	임기	2년 (연임 1차)	3년 (연임 제한 없음)	3년 연임(1차)
	임면	각 단체추천 → 복지부장관 위촉	추천위 추천 → 대통령임면	상임: 추천위 추천 → 복지부장관임명 비상임: 각 단체 추천 → 복지부장관위촉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	-	정부(4), 가입자(6), 공익대표(1) * 위원장: 복지부장관	정부(3), 가입자대표(5) * 위원장: 복지부장관	
집행조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무자본 특수법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설립근거 법에 명시)	
정부의 책임성	- 복지부장관이 관장 - 운용조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장기성과평가, 감사요청 등 간접적인 참여 (관리·감독권한 미보유)	- 복지부 장관이 관장 - 운용조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타	-	-	기금운용위원회 사무국설치(업무보좌, 사무지원)	

그림 1. 재직 공무원, 연금수급자 추이(실적치 및 전망치)



자료: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건의안, 2008, 9.

5) 이후에도 공무원연금 수급자 증가 추이가 계속되어 2020년에는 49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망이다.

(2) 2009년 전망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2008년 10월 공청회를 마치고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안)이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2009년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본 글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2009년 공무원연금제도 전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⁶⁾.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

우 2009년부터는 현재 과세소득의 5.5%인 공무원연금의 보험료가 7.0%로 27%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기여액 평균액이 현재의 17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다. 현재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 연간 연금 지급율이 현행보다 약 10% 인하될 것이다(현행 연간 급여승률 2.1% → 1.9% × 총 재직기간 × 평균소득). 그러나 과거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이 적용되어 연금액이 삭감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조만간 도래할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

해 현재 60세인 연금지급개시연령이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다(신규 공무원부터 적용). 또한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현재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신규 공무원부터 적용). 이와 함께 연금액에 대한 조정기준도 변경될 전망이다. 물가상승률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동시에 반영하는 현재의 연금액 조정기준이 점차 물가상승률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2019년부터는 100%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고액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의 상한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현재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의 1.8배를 연금산정 기준소득의 상한으로 검토하고 있다.⁷⁾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군인연금 역시 각각의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도 도입이후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어 온 사학연금은 이번에도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제도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학연금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일한 특수직역연금 내에서도 여타 직역연금과 상이한 점이 적지 않은 군인연금은 지금까지와 달리 공무원

연금과는 다른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계급정년제 적용 등에 따른 조기전역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제도 개편내용을 적용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3)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관련

(1) 현황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현 세대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노인의 60%(약 300만명)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9년에는 노인의 70%(약 360만명)에게 확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적 노후소득보장률이 2007년의 33.6%에서 2009년에는 85.9%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같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불분명한 제도 속성(선별적인 공공부조제도인가? 아니면 기초연금제도인가?)과 낮은 급여수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⁸⁾

표 2.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항 목	현 행	개선(안)
연금산정 기준보수	보수월액 (기준보수의 65%)	기준보수 (소득상한: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급여산식	(50%+재직기간-20)×2% * 33년 재직 상한: 76%	재직기간×1.9%
비용부담률	보수월액 기준 8.5% (기준보수: 5.525%)	기준보수 기준 '09년: 6.0% '10년: 6.3% '11년: 6.7% '12년: 7.0%
급여산정기초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전기간 평균보수 (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지급개시연령	• 60세('96이후 임용자) • 50 → 60세('00년말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65세 (신규자부터 적용)
연금액 조정기준	CPI + 정책조정 * 보수·물가간 ±2%p내 조정	• 단계적 CPI 적용 * '09~'13: 보수물가간 ±3%p내 조정 * '14~'18: 보수물가간 ±4%p내 조정 * '19~: CPI
유족연금 지급률	퇴직연금×70%	60% ('09년 신규자부터 적용)

자료: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정책건의안 발표문, 2008, 9.

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으로 2008년 12월 중순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 결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보다 강력한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에 대한 주문이 적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보다 재정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7) 이같은 제도개선 조치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정부의 적자 보전금이 향후 5년간 현행대비 50% 정도(연평균 1조 3,600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같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재정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갖는 한계라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덧붙여 재직자의 기득권은 대부분 인정하는 반면, 대부분의 제도 개선 내용을 신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도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8)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를 지급하도록 설계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08년 8만 4천원인 연금액이 2009년 8만 7천원, 2010년에는 9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표 3.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효과(실적 및 전망)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기초노령연금(A)	12.6*	60.0	70.0
국민연금(B)	17.5	19.3	21.1
특수지역연금(C)	3.5	3.5	3.5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D)	-	8.0	8.7
사각지대(E)	64.8	25.2	14.1
공적 노후소득보장률(A+B-D)+C	33.6	74.8	85.9

주: 2007년 기초노령연금은 경로연금 수급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포함) 비율임.

(2)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논의
지속

제도 성격이 모호한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향 및 국민연금과의 관계설정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논의의 위한 소위원회(이하 “통합 소위”) 및 공적연금 협의회가 2008년에 가동되었다. “통합소위”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으로 현재처럼 노인대상의 선별적인 제도로 유지하는 방안과 노인 모두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모두를 검토하였다. 위원회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2009년도에는 여론수렴 차원에서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방향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

(1)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의 필요성

현재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

연금 등 지역연금 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지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일례로 국민연금 9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지역연계에 19년 가입한 경우에는 총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연계제도가 없어서 연금을 수령하는 대신 퇴직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수령함에 따라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지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한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적연금간 연계제도가 도입될 경우 직업이동에 따른 노후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지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하기 위한 법(안)이 2008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되었다.⁹⁾

(2) 연계의 기본원칙과 세부내용

은 다음 표와 같다.

상이한 연금제도의 기본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과 각 지역연금의 가입기간만 합산하되, 연금급여는 각 연금기관이 가입기간을 기초로 산정·지급하는 연결통산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연계법안이 마련되었다. 연금지급을 위해 각 연금제도간 재정이전은 하지 않으며, 각각의 연금제도에서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과 관련된 세부 내용

3. 나오며

2009년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그 중에서도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조치,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가입 특례 적용, 노후소득 현실화를 위한 기준소득 상·하한

표 4. 국민연금과 지역연금 연계법 주요 내용

관련 이슈	세부 내용
연계대상 기간 및 급여의 종류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군복무 및 출산크레딧 추가산입기간과 임의계속가입기간은 제외)과 각 지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대상기간으로 함. - 연계급여의 종류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으로 함.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신청	-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60세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지역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한 때에 실시함. - 지역연금 퇴직자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2년 이내에 연계 신청할 수 있음.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가 되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사망하기 전까지 수급할 수 있음.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퇴직연금액	- 연계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연금액을 해당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함. - 연계퇴직연금액은 각 지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의 평균보수월액에 연간지급률을 곱하여 산정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연금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 청구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청구 사실을 알리도록 함.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	-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연계급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자료 :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정부안)”,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참고자료, 2008. 12.

9) 2009년 1월 14일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9년부터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인상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조직의 경우 기금 운영에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덧붙여 만성적인 재정 불안정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제도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수직역연금 제도개편의 기본방향은 지금보다는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액 및 보험료 부담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한편 2007년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2009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 위주로 2008년에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에 반해, 2009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바람직한 재구조화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도입되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